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9
----------	-----

2024. 9. 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12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안지연 의원)

-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합 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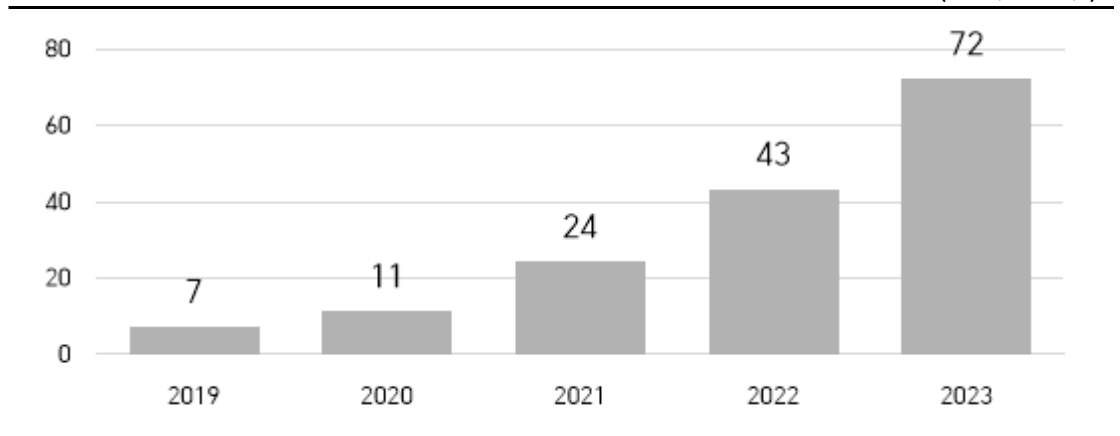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충전구역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시설 설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안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임.
-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장려해 왔음.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충전시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성을 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확대와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일반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에 비하여 진압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밝혀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57건이며¹⁾, 그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 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 >

(단위: 건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왔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 전기자동차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만대이고 서울특별시 전체 중 18%에 해당함.²⁾ 강남구는 주차장 20여곳에 질식소화덮개 및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강남소방서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소방훈련도 진행하였음.
-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의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로 인한 화재의 예방과 안전성 강화가 중요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자동차 전

1) 소방청, 2024.8.기준, <자동차 유종별 화재 건수 현황>.

2) 국토교통부, 2024.6.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

용충전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음.

나. 검토 내용

○ 관리책임부서의 지정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 중 시·도는 관리책임부서를 ‘예방안전 담당부서’로 정하였고, 자치구는 ‘환경·탄소중립 담당부서’로 정하였음. 이와 관련한 각 자치단체의 조례 제명 및 담당부서 지정 내역은 [붙임 1]에 정리함.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명 및 담당부서

- **안 제1조(목적)**은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구역에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정 이후 전기자동차 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³⁾, 전기자동차 특성상 화재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의 배경을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드러내었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함.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념⁴⁾은 친환경자동차법에 규정되

3) 국토교통부, 2024. 7.,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연도별 연료별 자동차 누적등록현황.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어 있음.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그 용어에 속한 일부 개념이 모두 ‘전기자동차’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소 혼란의 소지가 있음.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개념은 상대적으로 광의의 개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일부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만을 말하는 것임.

< 상위법령의 전기자동차 용어 비교 >

근거 규정	용어	개념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1호	전기자동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5호	하이브리드자동차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그 밖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비충전식 ⁵⁾ 포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제2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일부 (외부충전식(PHEV)만 해당)

※ 세부 개념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⁶⁾ 참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 조례의 제명과 안 제2조제3호의 전용주차구역 용어 정의를 고려하면, 이 조례에서는 전기차등이 사용하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5) 모터 내장형 풀 하이브리드(FHEV), 모터 보조형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등.

6) 한국자동차연구원, 2020.9., <친환경차 시대의 교두보, 하이브리드 자동차>.

< 주차구역 구분 비교 >

근거 규정	용어	주차 가능한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u>충전시설의 충전구역</u>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 제7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일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제한되어 있음⁷⁾. 조례 제정시 용어를 사용할 때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상위법령에 정하여진 정확한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함.

< 정의 규정 비교 >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전기자동차등”이란-----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 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관계인” 등 다른 용어는 개념 정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에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임.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고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은 화재예방정책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 **안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임.

-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화재 등은 상대적으로 화재 전이 속도가 빠르고 소화 난이도는 높아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관련 계획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실태조사에서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화재 진압 장비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야 할 것임.

[붙임 2] 전기차 화재 특성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호의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제2호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제3호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제4호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을 이행한다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안전시설 지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열거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해당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이 그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임.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관계인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여,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제2항에서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구청 차원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⁹⁾.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함.
-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극대화되면서 정서적으로는 공포심마저 일어난 가운데,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지휘하고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이 합동하여 구성한 범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음.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빠르면 2024년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임¹⁰⁾.

<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 진행 현황 및 주요 논의 사항 >

일 정	TF 진행 현황
2024년 6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6.24.) 범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
7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 구성(행안부 단장) 환경부 주관으로 전기충전시설 소방·안전 여건 점검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발생(8.1.) 범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 구성(국무조정실 지휘)
(예정) 9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 긴급점검 범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 종합대책 발표
(예정) 10월	종합대책 기반 <전기차 안전 가이드> 용역 보고(서울특별시)

주요 논의 사항
△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기술표준 검토 등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보고 체계, 화재 진압 절차 점검 등
△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
△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 8.) 참조.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번 범정부 TF가 구성되기 이전 2023년 10월에 이미 관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환경과(02-3423-6220)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10)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52)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런 조례를 제정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해당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정부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그에 기반하여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중임¹¹⁾.

- 일부 안전시설의 경우 최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 이러한 종류의 특수한 화재에 효과적인 안전시설이 무엇인지, 안전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범위로 설치하여야 화재진압에 유효한지 등에 대한 재점검¹²⁾이 전제되어야 해당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향후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과 자치구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간의 중복 지원 허용 여부 및 지급 비율, 항목별 지원 비용의 상한선, 지원 대상 선정 등 심사 기준 등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함¹³⁾.
- 기준이 정해져야 향후 i)자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ii)지원받는 관계인들 간에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고,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는 관계인들에게 설명 및 대응할 수 있으며, iii)정당성과 적절성을 갖춘 사업예산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리책임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시 이 점에 유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2)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12)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비용추계 논의가 나왔을 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소화기가 없어 기술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하였다고 함. 출처는 위와 같음.

13)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시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들이 요양·거주하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관계인에게 지원을 받아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설치 시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는 화재 발생시 관계인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관계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임.
 -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진화 작업의 난이도와 재발화 위험도가 높은 편이고, 초기 대응이 중요¹⁴⁾한만큼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응매뉴얼 배포도 안전관리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 안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¹⁵⁾,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권고 기준이 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은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임.
 - 안 제8조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며, 조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임.
- 안 제8조제2항은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¹⁶⁾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14) 국립소방연구원, 2023. 3.,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

1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024. 2., <건물 지하 전기차 화재안전 진단 및 안전대책>, p.121.

16)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다면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¹⁷⁾.

- 친환경자동차법 제15조에 정하여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이 조례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임. 즉,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업무의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¹⁸⁾에 위탁할 수 있음.
- 입법 형식의 경우 위탁 관련 규정을 특정한 조문에 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조문에 규정된 사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임.
- 이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위탁이 필요한 업무가 여러 조문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¹⁹⁾ 별도의 규정으로 제9조(사무의 위탁)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²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수탁자가 갖추어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법제처, 2022.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탁 사무의 대상 및 범위, p.263.
위탁의 근거 및 법률 우위의 원칙, p.258.

18) ‘관계 전문기관’이라는 표현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

19) 법제처, 2023.12., <법령 입안·심사 기준>, 민간위탁의 규정 방식, p.494~497..

20)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 <법제기준과 실제>,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등, p.732.

야 할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신설 조문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위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위탁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안
<p>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u>구청장은 전</u> 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u>협력체제</u>를 구축할 수 있다.</p> <p>② <u>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u>구청장은</u> ----- ----- -----<u>협력체계</u> -----.</p> <p><삭 제></p> <p><u>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는 제정안 작성시 발생한 오타인 것으로 보임(제→계)

- 안 부칙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i)아직 특별시 또는 구 차원에서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고, ii)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등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자는 관리책임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기준 등이 정해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따라 보호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하면 유익한 조례라고 이해됨.
- 다만,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조례의 실체적 측면에서는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이 없고, 명확하게 정할 수도 없는 현재 시점에 무리하여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임.
- 입법 형식적 측면에서는 일부 용어 표현이 정확해지도록 수정하고,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 제명 및 담당부서 (2024. 8.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명	담당부서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예방과	(시·도) 예방 및 안전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경상북도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스마트환경국 환경과	(자치구) 환경 및 탄소중립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환경교통국 기후환경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문화환경국 탄소중립과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위생과	

[붙임 2]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 (2024. 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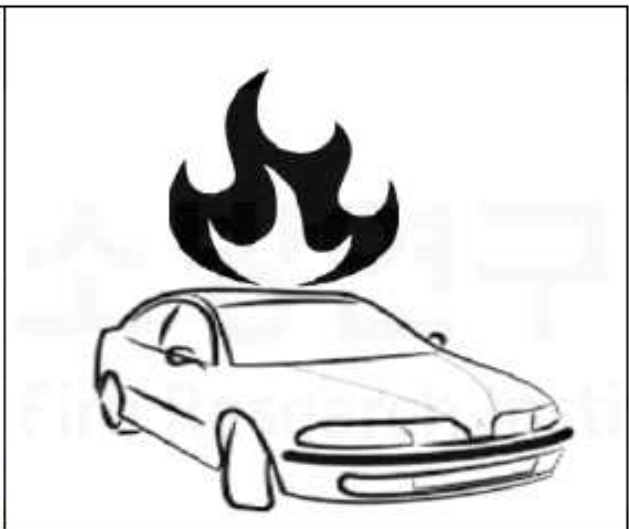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2023.1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전기차 화재는 왜 위험할까?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전기자동차의 결함② 충전 중(과충전, 과방전, 과열), 운행 중 충돌, 외부충격 등 기계적인 결함③ 배터리 결함: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발화 위험성이 높음④ 전기장치 결함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쉽게 불이 꺼지지 않음② 한번 꺼진 불도 재발화③ 소화에는 많은 물이 필요함④ 많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방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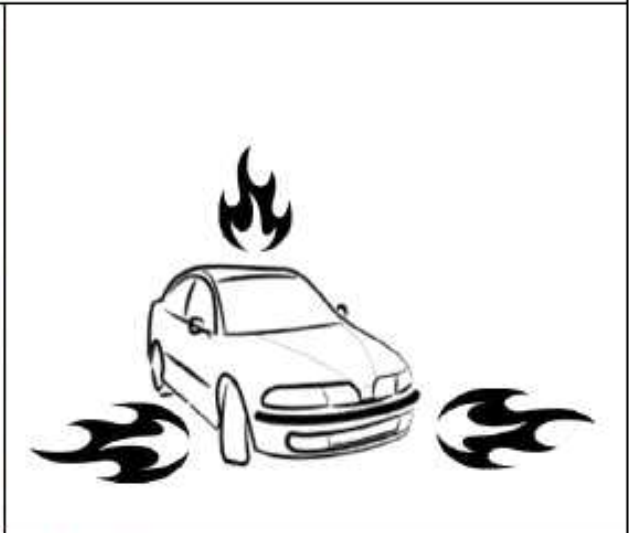
전기차 화재가 일반화재와 다른 점은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어렵고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는 질식소화, 냉각소화 등의 방법으로는 진화할 수 없으며 물이나 소화약제 등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아 외부 냉각이 쉽지 않다는 것임. 장시간 방수가 가능한 수원(물 저수량)을 확보하고, 배수 설비도 높은 수준으로 갖추어야 하고, 배연설비도 강화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전기자동차 화염 방향**

- [내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요 가연물은 엔진룸 내부 및 연료, 실내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염의 상승효과로 인해 바람의 영향이 없다면 주로 위로 향함.
- [전기차] 전기자동차의 주요 가연물은 고전압 배터리팩 및 실내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대부분 방출되는 압력 및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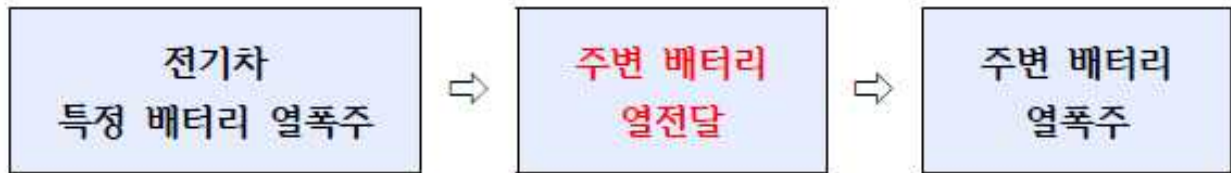


내연기관 자동차 화염 방향



전기자동차 화염 방향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전이 과정



- 특정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폭주에 의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변 배터리에 열을 전달하여, 주변 배터리로 열폭주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과정

□ 배터리 냉각의 필요성

-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근본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은 주변 배터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여 열폭주 확산을 막아야 함 ⇨ 냉각소화 필요
- 배터리 열폭주 반응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열폭주가 전이되지 않으므로 열폭주가 발생한 배터리의 반응이 종료되면 화재는 진압됨
-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체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차체 외부 주수에 의한 냉각효과가 미미하므로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질 의 : 조례 제정안의 제5조 안전시설 지원이 본 조례의 핵심인데 제5조제2항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재 중앙정부와 시에서도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지침 등이 없는 상태인데 상위 기관의 종합대책과 지침이 나온 후 조례 제정이 바람직 하지 않나.
- 답 변 : 당초 본 조례안은 연초에 준비하였으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에 관련해 전기차 화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며 결과가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 내용을 포함하고자 조례안 발의를 미뤘음. 그 사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여러번 발생하고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고, 상위 기관의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관련 사항을 선언적인 지원 계획이라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후 상위 기관 기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 질 의 : 조례 제정안 제8조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입법 체계상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 답 변 : 발의자의 입법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를 신설하고 기존 제8조를 수정하는 데 동의함.

7. 토론 요지

- 조례 제명과 내용, 상위법령의 표현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해 조를 구분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89호

발의일자 : 2024. 9. 6.

제 안 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제명과 내용, 상위법령의 표현에 근거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함
- 원활한 조례의 시행과 입법경제성 도모를 위하여 조의 항을 구분하고 조를 신설하고자 수정함

2. 수정내용

- 정의로 규정하는 대상을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고 근거 법령을 수정함(제2조)
- 조의 항을 각각 구분하고 조를 신설함(수정안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자동차”란”을 ““전기자동차등”이란”으로,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u>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u></p> <p>2. ~ 5. (생략)</p> <p><u>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전기자동차등”이란 ----- ----- ----- ----- <u>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u>.</p> <p>2. ~ 5. (현행과 같음)</p> <p><u>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u></p> <p><u>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 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방화벽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9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안지연·윤석민·박다미·
복진경·전인수·한윤수·
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이성수·오은누리·이도희
의원(이상12인)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방화벽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